동탄(2)신도시 C7 블록 “동탄역 예미지 3차”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8.03.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4.1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이며, 청약과열지구&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tanc7-yemiz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12)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12.)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7.04.12. 이전부터 계속거주)에서 일반 공급 세대의 30%를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7.10.12.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등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5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가 2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청약과열지역: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부산 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 부산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전역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사항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8418호, 2017.11.07., 일부개정]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dongtanc7-yemizi.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방문,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견본주택에는 84C, 101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84A, 84B, 87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시 공급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17499 (2018.04.12)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C7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47층, 4개동(4개동 중 1개동 오피스텔), 총 아파트 4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4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4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면적-㎡,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 주택	2018000573-01	84.6748A	84A	84.6748	25.9750	110.6498	60.1554	170.8052	28.5019	114	11	11	11	3	78	3
	2018000573-02	84.6397B	84B	84.6397	25.9418	110.5815	60.1305	170.7120	28.4901	132	13	13	13	3	90	3
	2018000573-03	84.6531C	84C	84.6531	25.3231	109.9762	60.1400	170.1162	28.4946	101	10	10	10	3	68	3
	2018000573-04	87.5651	87	87.5651	26.0710	113.6361	62.2088	175.8449	29.4748	34	-	3	-	1	30	-
	2018000573-05	101.8228	101	101.8228	29.4665	131.2893	72.3379	203.6272	34.2740	117	-	11	-	3	103	3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위세대 계약면적 등은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사업시행인가 도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면적-㎡,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2018/11/20	2019/05/20	2019/11/20	2020/05/20	2020/11/20	2021/05/20	
84A	114	101동 3호 102동 2호 103동 3호	3층	3	140,940,804	296,059,196		437,0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131,100,000
			4~5층	6	140,940,804	305,359,196		446,30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133,890,000
			6~13층	24	140,940,804	314,659,196		455,600,000	45,560,000	45,560,000	45,560,000	45,560,000	45,560,000	45,560,000	45,560,000	136,680,000
			14~21층	24	140,940,804	323,959,196		464,900,000	46,490,000	46,490,000	46,490,000	46,490,000	46,490,000	46,490,000	46,490,000	139,470,000
			23~35층	39	140,940,804	333,259,196		474,20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142,260,000
			36~41층	18	140,940,804	337,859,196		478,800,000	47,880,000	47,880,000	47,880,000	47,880,000	47,880,000	47,880,000	47,880,000	143,640,000
84B	132	101동 2호 102동 3호 103동 2호	3층	3	140,882,380	295,817,620		436,700,000	43,670,000	43,670,000	43,670,000	43,670,000	43,670,000	43,670,000	43,670,000	131,010,000
			4~5층	6	140,882,380	305,117,620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6~13층	24	140,882,380	314,417,620		455,300,000	45,530,000	45,530,000	45,530,000	45,530,000	45,530,000	45,530,000	45,530,000	136,590,000
			14~21층	24	140,882,380	323,717,620		464,60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139,380,000
			23~35층	39	140,882,380	333,017,620		473,90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142,170,000
			36~47층	36	140,882,380	337,717,620		478,60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143,580,000
84C	101	101동 1호 [3층~13층] 102동 5호 103동 1호	3층	3	140,904,685	293,395,315		434,30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130,290,000
			4~5층	6	140,904,685	302,695,315		443,60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133,080,000
			6~13층	24	140,904,685	311,895,315		452,80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135,840,000
			14~22층	18	140,904,685	321,195,315		462,10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138,630,000
			23~35층	26	140,904,685	330,395,315		471,300,000	47,130,000	47,130,000	47,130,000	47,130,000	47,130,000	47,130,000	47,130,000	141,390,000
			36~47층	24	140,904,685	334,995,315		475,900,000	47,590,000	47,590,000	47,590,000	47,590,000	47,590,000	47,590,000	47,590,000	142,770,000
87	34	101동 1호 [14층~47층]	14~22층	9	145,751,695	297,225,732	29,722,573	472,70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141,810,000
			23~35층	13	145,751,695	305,771,186	30,577,119	482,10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144,630,000
			36~47층	12	145,751,695	310,134,823	31,013,482	486,900,000	48,690,000	48,690,000	48,690,000	48,690,000	48,690,000	48,690,000	48,690,000	146,070,000
101	117	101동 5호 102동 1호 103동 5호	3층	3	169,483,569	307,833,119	30,783,312	508,10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152,430,000
			4~5층	6	169,483,569	317,742,210	31,774,221	519,0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55,700,000
			6~13층	24	169,483,569	327,560,392	32,756,039	529,80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158,940,000
			14~22층	27	169,483,569	337,378,574	33,737,857	540,60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162,180,000
			23~35층	39	169,483,569	347,196,755	34,719,676	551,400,000	55,140,000	55,140,000	55,140,000	55,140,000	55,140,000	55,140,000	55,140,000	165,420,000
			36~41층	18	169,483,569	352,105,846	35,210,585	556,80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167,040,000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공공택지 지적정리와 대지면적 확정 및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및 샤시, 추가선택 옵션금액)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판매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금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도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 임.　· 본 아파트의 공급(판매)조건은 공급(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기 아파트 동번호는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동번호 부여원칙”에 따라 동번호가 부여되므로, 향후 상기의 동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84C	87	101	계
일반[기관추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의 10% 이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등	11	13	10	-	-	3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 주택형의 10% 이내)	경기도 거주자 우선배정 (50%)	6	7	5	2	6	26
	수도권 거주자 (50%)	5	6	5	1	5	22
	소 계	11	13	10	3	11	48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의 10% 이내)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 (30%)	3	4	3	-	-	1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2	2	2	-	-	6
	수도권 거주자 (50%)	6	7	5	-	-	18
	소 계	11	13	10	-	-	34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전 주택형의 3% 이내)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 (30%)	1	1	1	1	1	5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1	1	1	-	1	4
	수도권 거주자 (50%)	1	1	1	-	1	4
	소 계	3	3	3	1	3	13
합계		36	42	33	4	14	12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기간,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금 또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 면적별 요건이 충족된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청약1순위 자격요건이 충족된 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1순위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자의 입주자 저축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유의사항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는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 추천) 특별 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우수선수,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 등에 해당 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②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복지과) 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④ 이주대책자: 경기도시공사(주택판매팀), LH(동탄사업본부) ⑤ 중소기업장기근속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⑥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가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 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2018.02.2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배점에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단,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단,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시에는 이전 배우자 와의 자녀수도 포함)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2)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1) 입양의 경우 :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2)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일반공급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 가점제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의 청약가점점수 산정 기준표로 산정함 (주택전시관 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석에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부적격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_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5명이상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3명이상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구 분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자료)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02,590원 이하	5,846,903원 이하	5,846,9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6,003,108원 이하	7,016,284원 이하	7,016,284원 이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 포함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입주자저축별 예치금액(납입인정금액) 및 가입기간 충족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청약 신청 유의 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제 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 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함 (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함으로 변경 불필요)　②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① 기타 지역(지방)에서 수도권 지역 전입시 청약접수 가능함.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 신청 가능(감액 사유시 변경 불필요)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거주기간 산정시 유의사항 - 화성시(1년) : 화성시 관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최초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함. (주의:“화성시→수원시→화성시”인 경우 화성시에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경기도(6개월) : 경기도 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화성시→수원시→용인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 (예:“화성시→인천광역시→수원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수도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순위	자격요건 및 안내사항	거주구분
1순위	· 가점제 적용안내 : 청약자는 가점제 및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 및 과거 가점제 당첨사실에 따라 분류됨. - 적용대상 (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적용비율　(1)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 가점제 75%, 추첨제 25%　(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 : 가점제 30%, 추첨제 70% · 필수 자격요건(아래 ①~⑤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기간 2년 이상　② 입주자저축 인정금액 : 입주자저축별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납입인정금액) 충족 ③ 세대 구성원 : 세대주　④ 주택 소유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⑤ 당첨 사실 : 최근 5년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는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입주자저축별 예치기준금액(납입인정금액) 충족 요건 - 청약예금 :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예치금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 청약부금 1) 전용면적 85㎡ 이하 : 매월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2) 전용면적 85㎡ 초과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화성시 (1년 이상) / 경기도 (6개월 이상)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6개월 미만)]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기타 시/군)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주택형(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주택형(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까지 모두 청약 가능함

구분	내용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단독세대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 가족의 인정 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대상으로 30%를 먼저 선정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자를 대상으로 20%를 선정하고, 기타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자) 대상으로 50%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청약자(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	·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당사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당사 홈페이지(www.dongtanc7-yemizi.co.kr)에공개함.

Ⅳ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청약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다자녀가구/신혼부부(1순위)	2018.04.17.(화) 10:00~16:00	견본주택 방문신청	동탄역 예미지 3차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30번지]
	일반(기관추천)/노부모부양/신혼부부(2순위)	2018.04.18.(수) 10:00~14:00		
일반 공급	1순위	2018.04.19.(목) 08:00~17:30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 외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2순위	2018.04.20.(금) 08:00~17:30		

※ 특별공급의 신청대상 및 순위별 접수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2순위는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접수가능)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은행 외 모든 은행 청약가입자(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국민은행 청약가입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또는 「KB국민은행」의 “청약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중앙회, 농협, 우리, SC,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한국씨티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서약서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 공급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노부모 부양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①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해당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접수 장소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Ⅴ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발표 일시 및 장소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 일시 : 2018.04.18.(수)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특별공급 공급신청자가 많아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등은 견본주택에 게시 예정임
	동호수 발표	· 일시 : 2018.04.26.(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dongtanc7-yemizi.co.kr) 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당사 홈페이지(www.dongtanc7-yemizi.co.kr)에 공개될 예정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정당 당첨자의 계약기간,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동·호수를 배정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하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dongtanc7-yemizi.co.kr)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 외 모든 은행 청약자(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04.26.(목)부터 조회 가능 (※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조회가 가능하나 당첨자의 계약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4.26.(목)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05.08.(화) ~ 05.10.(목) 3일간, 10:00 ~ 16:00	동탄역 예미지 3차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30번지]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의 사유로 정당 당첨 처리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제27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아파트 계약용)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인감도장(아파트 계약용) 1통(서명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 등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주민등록표초본(거주기간 및 세대주 기간 확인 불가 시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아파트계약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17-0013-8731-1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회차별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제외됨.
※ 공급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요망. (무통장입금증은 공급금액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나, 환불이자는 없음. (환불시기,방법 등은 추후 통보)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알선하며,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먼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됨.(이자는 먼저 사업주체가대납해주되, 입주시 사업주체가 납부한 이자를 계약자는 당사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일(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는 대출받은 중도금의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정부정책 및 금융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절차(최고장 통지등)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은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Ⅶ 발코니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함.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공사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자 부담)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공고상 타입)	84A	84B	84C	87	101	비고
발코니 확장금액(계약자 부담)	13,900,000	14,700,000	17,100,000	17,100,000	17,3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상 명시 예정임.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농협은행	317-0013-8683-6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계약)일정,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납부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 계좌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또한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3.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비확장형 선택시 외부 샤시는 개별 설치해야하며, 설치시 풍압과 풍동에 적합한 샤시 재질로 설치하여야함. (사양표기)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확장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여 제공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비확장 세대 포함)는 미확장 발코니 및 설비PD 등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벽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발코니 벽체의 출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확장 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내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재질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등 확장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층고가 낮아질 수 있으며, 천장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발코니 확장 시 면적 증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 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창호특성 및 창호사양 창틀 특성에 따라 거실부분 분할창, 침실1분할단창, 침실2,3,4 분할창 등의 창틀의 두께 및 넓이, 창호 개폐방향 등은 견본주택과 같이 각각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계획상 PNS홀즈 시공예정이나 최종 본 시공시 창호사양(제조사 , 브랜드, 하드웨어)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위치	실내기수량	판매가	비고
84A / 84B / 84C	기본 (거실+안방)	2	3,450,000	
	기본 + 침실1	3	4,600,000	
	기본 + 침실1 + 침실2	4	6,000,000	
	전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	7,500,000	알파룸 펜트리특화 선택시 설치불가
87 / 101	기본 (거실+안방)	2	3,650,000	
	기본 + 침실1	3	4,850,000	
	기본 + 침실1 + 침실2	4	6,100,000	
	전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	7,600,000	알파룸 펜트리특화 선택시 설치불가

2. 주방가구 및 빌트인가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업체명	품목	판매가	비고
전타입	인덕션 3구 레인지	SK매직	IHR-B310E	550,000	
101	보조주방 가구	한샘	보조주방	1,800,000	

3. 알파룸 펜트리 특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판매가	비고
84A	팬트리	2,700,000	
84B	팬트리 + 드레스룸	2,500,000	
84C	팬트리	2,700,000	
87	팬트리	2,700,000	
101	팬트리 + 드레스룸 + 베타룸	4,500,000	

4.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가구 및 빌트인가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농협은행	317-0013-8728-2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주방가구 및 빌트인가전, 알파룸 펜트리 특화	농협은행	317-0013-8729-6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5.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납부일정 및 금액은 계약서 상 명시예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거실, 안방) 부분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만 기본으로 설치되므로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일부실의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배관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함.(위치는 시공상 간섭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을 시공함에 따라 선택품목 설치위치의 단위세대 마감재의 변경 및 미시공 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미시공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을 요청 할 수 없음.　· 빌트인냉장고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납부일정 및 금액은 계약서 상 명시예정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1.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구, 타일, 창호,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방식」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일괄 선택 (개별 선택 불가)	바닥	마루, 현관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수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걸레받이,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도장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천장	천정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도장, 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천정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일반 가구	현관 신발장 및 창고장(해당 타입), 드레스룸장, 화장대(상판가공석 포함), 붙박이장, 복도장/선반, 수납선반 및 악세서리 일체	
	주방	주방/식당 가구 일체(상판, 씽크볼 및 악세서리 일체, 선반), 벽 타일/인조석, 주방TV, 주방 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드, 오븐), 수전류, 다용도조명레일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비데(부부욕실), 벽/바닥 타일, 천장재, 석재(세면대 뒷벽),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도막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발코니	수전류 (세탁수전, 발코니 수전 등), 전동빨래건조대	
	문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플라스틱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루버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타입)	84A	84B	84C	87	101
마이너스옵션 금액	27,767,000	27,750,000	27,598,000	29,505,000	34,089,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 설치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에 착수하시기 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시공 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품목의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그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 분양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발코니확장을 선택할 수 없음(신청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주의하시기 바람)

Ⅷ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방문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 확인사항 작성 ⇒ ⑤ 확인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방문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1.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37조, 38조, 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됨.　2.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21년 10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64조 적용)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기밀성통기량 1등급 제품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세대별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하고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을 30%이상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 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 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구분	성능범주	성능등급	구분	성능범주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환경 관련등급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생활 환경 등급	단지내 ·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	★★		대중교통의 접근성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가변성	★★		운영 ·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환경 관련 등급	에너지 성능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홈네트워크 종합 시스템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방범안전 콘텐츠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화재 소방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제연설비	★
	절수형 기기 사용	★★★		내화성능	★
	물사용량 모니터링	★★		수평피난거리	★★★
	자연지반 녹지율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생태면적률	★		피난설비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 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 내용

(단위: 원)

항목	공종	금액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58,207,590,000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7,262,244,100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밖의비용	3,039,472,840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68,509,306,940	
공사비	토목	18,778,232,039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67,755,232,612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10,269,325,310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밖의 공종	17,677,223,589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밖의 공사비	12,800,748,116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127,280,761,666	
간접비	설계비	1,474,772,988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2,475,743,751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2,387,421,622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 · 가스 · 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6,337,938,361	
그 밖의 비용		39,506,393,033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 계		241,634,400,000	

■ 주택법 제38조2의 제6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원)

항목	공종	금액	비고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	58,207,590,000	
	택지비 가산비	15,472,644,507	
	소계	73,680,234,507	
건축비	지상층건축비	97,384,302,821	
	지하층건축비	31,063,469,639	
	가산비용	39,506,597,938	
	소계	167,954,370,398	
합계		241,634,604,904	
(3.3㎡)당 반영금액		13,881,738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69,144,080,000원	제 06712018-101-0000300 호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 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지티엘이엔지	㈜하림기술단
감리금액	2,206,490,000	812,873,160	544,500,000	198,00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동탄2신도시 C7블록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임.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사명	주소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시행사	(주)금성백조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3번길(탄방동)	042-630-9595	160111-0017304
시공사	(주)금성백조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3번길(탄방동)	042-630-9595	160111-0017304
분양대행사	(주)마켓리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에프-914호(송도동,송도더샵퍼스트제이월드)	031-781-7188	120111-0739542

Ⅸ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⑨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신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 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09.0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09.01.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은 2018년 3월 2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등을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 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등록 신청 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및 장소는 수집운반차량 통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함에 있어 설치장소 인근 세대의 악취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위치를 확인 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철거 및 이전설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 등은 입주민들이 구비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 및 민원,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의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이나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단지 출입구와 접한 도로 일부의 완공 예정시기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 당 사의 시공범위가 아닌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 어린이공원, 하천, 보행자도로, 완충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에 향후 신축되는 건물로 인해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 준공 후 소음 및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향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지반레벨(G.L)에 맞추어 이에 면하는 아파트의 바닥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의 시설 등으로 인하여 야간조명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비선호하는 용도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음.
· 아파트 세대내부 붙박이 장류(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등)와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정 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한다.
· 주택건설사업승인 부지 및 기반시설 부지는 지적 공부상 면적으로서 향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및 경계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양금액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적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을 요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설계변경에 이의 없이 동의함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 당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여야 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관련으로 개인 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사업승인 도면 기준으로 모집공고의 분양가를 책정하였으며, 전용면적 증감이 있더라도 분양금액 정산(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금액은 면적 증감으로 인한 분양가의 상승 또는 감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면적(㎡)× 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및 보상요구를 일체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화성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로서,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 변경을 이행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의 최종사업승인도면과 준공 후 준공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개인 또는 임의 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일이 다소 앞 당겨지더라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본질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자(대납) 지원 기간축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다.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등으로 변경될 예정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 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짐.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주체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입주자 및 입주자가 결성한 임의단체 등이 입주 기간 연장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이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청약관련 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인 성명을 인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주택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시행사 및 시공사는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된 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시공 및 납품의 지연 예상 등으로 인해 공정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에는 인테리어 소품가구, 기타 전시용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전시용품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민원(추가공사)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문 및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전단지, 리플렛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화성동탄(2)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화성동탄(2)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63호, 2017.10.13.)로 승인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2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따른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초등학생은 아인초, 중학생은 동탄2-1중학군 및 고등학생은 기존학교 및 신설예정인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나,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학생은 동탄2-1중학군(총 6개교 계획)은 2021년도에 한빛중·청계중·동탄중·감배중·동탄1중(가칭)의 5개교로 운영할 계획이며,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비치계획 ,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탄(2)지구의 신설학교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에 따른 신설학교 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결정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중학교 입학」은 학교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화성동탄2신도시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등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입주 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및 향후 계획된 도로의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사업주체 등에서 책임지지 않음.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주변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이 계획중에 있으므로 추후 사생활권, 조망권, 일조권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경부고속도로, 영덕~오산간 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간 고속도로) 및 국지도 23호선이 통과(공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 대중교통 (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포함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정 등)이 존치예정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탄JC 인근(폐기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소각)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발생지역이며, 지구내외 인접지역에 계획된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시설),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처리장), 변전소, 가압장, 배수지, 존치기업, 장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각종 도시시설물, 특수학교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고 계약(청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문제제기 등을 할 수 없음을 수인하시기 바람
· 화성동탄(2)지구 내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남측에 변전소, 북측에 케이블헤드, 오수중계펌프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등), 전기공급 설비 (변전소, 케이블헤드 등), 가스공급시설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당사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 화성동탄(2)신도시 서남측에 인접하여 동탄 일반산업단지(동탄일반산단, 동탄2일반산단, 동탄3일반산단, 장지도시첨단산단(가칭))가 조성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 에너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지구내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 안내문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구분	유의사항
주변 환경	1) 단지주변도로 · 공동주택 단지 서측 24m, 남측 20m, 동측 54m, 북측 36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보행가능한 보도가 설치 예정입니다.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인접단지 · 공동주택 단지 남측의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로 인한 소음, 진동, 빛 공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공동주택은 택지개발지구로서 인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등의 인프라 시설 공사, 업무시설 및 복합시설 등의 신축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준공 후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분양상가)의 입점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부	1) 공통사항 · 건축허가상의 미 표시된 면적(대지지분)은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내 · 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주변의 건축물 신축, 동간 또는 세대간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설계변경, 계약 해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 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판매시설, 오피스텔 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동별 위치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동선 · 기능 ·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단지의 출입구는 공동주택용과 상업 및 오피스텔 이용자가 분리되어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구의 위치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PIT 상부세대, 피난안전층 상하부 세대, 최상층 세대, 층간 세대평형이 상이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세대, 외부와 접하는 측세대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타 세대 대비 냉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탑층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비주거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및 공동주택 외벽 및 최상층에 항공장애등 설치 등에 따른 빛의 산란,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주거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계단, 복도 등) 및 이와 유사한 공간(옥상, 피난층 등)은 당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호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경사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소화수조 및 기계설비로 인하여 하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무선 AP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전등, 전열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견본주택에 따르며,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계획시)에 의한 눈부심 등의 생활환경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중앙에 남쪽의 출입구부터 북쪽의 상가로 연결되는 24시간 개방된 남북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의 특성상 비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남서쪽으로 주거단지와 상가스트리트를 연결하는 계단이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보안상 게이트가 설치예정이나, 비거주자의 침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일부세대 하부로 공동주택용 차량출입구가 통과하여, 이에 따른 차량소음, 매연, 빛 공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일부 저층세대는 하부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이용자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창고는 101동 1호 인근, 102동 5호 인근, 103동 1호 인근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며, 각 동별 및 호별로 거리가 상이합니다. · 101동 어린이집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어린이놀이터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공동주택용 주출입구 인근에 통학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어,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옥상에는 탈취기, 쿨링타워 및 실외기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시각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1동 1호 측면, 102동 후면, 103동 3,5호 전면 및 1호 측면) · 판매시설 옥상은 이용이 제한되나, 추후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시각적 간섭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휀룸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설치되며, 환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 방향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2층 일부 피난층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로 인하여 상하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피난안전구역은 피난 외 다른 목적(휴게시설 등으로의 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기준 준수에 따라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이에 의한 빛 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단지출입구 · 단지 서측에 공동주택용 차량출입구 1개소, 102동 남서측 계단을 이용한 보행자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외부인과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공지로서 향후 이에 대한 소유권 주장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이로인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조경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기안전매트 사이즈 또는 설치되어야 할 위치에 따라 조경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하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지하4층 3개층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출입구는 단지 서측 101동 하부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상복합의 특성상 지하주차장 층별 주차면의 균등배분이 어려우며, 일부 호수는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높이,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의 계획안 변경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분양면적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주차장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 각종 설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2,3,5호 라인 하부, 102동 1,2호 라인 하부, 103동 1,2호 라인 하부) · 지하주차장의 층고는 마감, 설비종류, 진입차량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실 시공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부대복리시설 · 판매시설은 101동~102동 사이, 102동 우측 및 하부, 103동 좌우측 하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판매시설용 주차와 조업공간은 판매시설용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경비실은 서측 공동주택용 주출입구 문주와 통합하여 1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되거나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방재센터는 103동 후면 지하1층에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독서실, 키즈카페,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탈의실, 샤워실, 경로당 등)은 단지 중앙의 지하1층에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101동 1호라인 1층에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품 및 집기류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탈의실)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는 각 동의 지하1층의 동출입구 인근에 1개소씩, 우편물 수취함은 지상1층의 출입구 방풍실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본 공사시 위치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주동 · 1,2호와 3,5호의 공용 엘리베이터의 형태, 면적, 채광 및 환기 등은 세대 조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난안전구역의 외부 창호는 향후 설계변경 절차를 통하여 형태, 재질, 개폐부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2,3호 라인 전면 지상1층에 맘스라운지 및 승하차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매연, 빛 공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상1층에 다음과 같은 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2호 라인 : 지하주차장 휀룸 환기구, 제연휀룸 환기구 / 3,5호 라인 : 우수저류조 휀룸, 기계실 휀룸, 제연휀룸 환기구)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5호라인 하부에 차량출입 램프가 설치되며,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 소음, 차량출입 경고음 및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라인 1층에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라인 북동측으로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라인 북동측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2호용 엘리베이터 2대, 3,5호용 엘리베이터 2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규격, 디자인 및 제원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라인은 3~13층은 84C, 14층 이상은 87이 설치되어 84C 세대에서는 거실, 안방 외벽이 일부 돌출되어 채광,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1,2,3호 지하1층 및 북서측 후면부에 판매시설이 설치되어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1,2호라인은 판매시설 계획 및 지형 단차로 인해 3,5호라인 필로티를 거쳐 진입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동선거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5호라인 북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2동 3호라인 남서측편에 수공간 및 내부 상가스트리트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1,2호용 엘리베이터 2대, 3,5호용 엘리베이터 2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규격, 디자인 및 제원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상1층에 다음과 같은 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2호 라인 : 지하주차장 휀룸 환기구, 제연휀룸 환기구 / 3,5호 라인 : 제연휀룸 환기구, 지하주차장휀룸 환기구)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2호 라인 전면 및 3,5호 전면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호라인 북동측 측벽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2호용 엘리베이터 2대, 3,5호용 엘리베이터 2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규격, 디자인 및 제원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동 지상1층에 다음과 같은 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1,2호 라인 : 제연휀룸 환기구/3,5호 라인 : 제연휀룸 환기구, 저수조 환기구)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